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지원체계 마련〉
■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66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희 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종합 검토	4
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현황	4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6
다. 타법과의 관계	8
2. 주요내용 검토	11
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11
나.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 및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의 설치	15
다. 핵심품목 및 산업지구의 지정 · 지원	20
라. 전문기업의 지정 및 모빌리티 구매 등 지원	25
마. 자율주행 데이터의 관리 및 유통	28
바.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3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언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6. 12.
3. 회 부 일 : 2025. 6.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은 인공지능, 센서, 통신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향상, 물류 효율화,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하여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은 기술개발 수준에 비하여 부처 간 제도의 중첩, 데이터 기반의 실증·평가·인증 인프라 부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정부의 전략적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체계적 구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를 둠(안 제7조).
- 라.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을 설립함(안 제8조).
-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연구개발, 실증·시험·평가·인증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 및 활용 지원, 시장 진출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를 지정하고,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 간 협력사업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창업기업, 중소·중견기업·대기업 등을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우선 선정, 공공조달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실증 및 운행 결과에 관한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은 해당 데이터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

Ⅲ. 검토의견

1. 종합 검토

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현황

자율주행 모빌리티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이동수단 일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정안에 따를 때 자전거 · 자동차 · 열차 · 항공기 · 선박과 도심항공교통(드론) 및 비동력 교통수단을 포괄하는 개념에 해당함¹⁾.

자율주행 모빌리티는 자동차 · 열차 · 항공기 · 선박 및 드론 등 운송수단 자체의 제조 · 판매 등 자체 산업을 포함하여, 이를 운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운영체제 및 소재의 개발,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활용한 승객과 화물 등의 운송 서비스, 이에 따른 보험과 공제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임.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만 별도로 분석하더라도 2025년 2,737억 달러에서 2034년 4조 4,503억 달러로 연평균 36.3% 성장이 예상되는 등²⁾ 성장가능성과 경제파급효과가 큰 산업에 해당함.

1)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 모빌리티”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모빌리티 수단 또는 모빌리티 서비스 중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것을 말한다.

2) Precedence Research, 「Autonomous Vehicle Market Size and Forecast 2025 to 2034」.

반면 자율주행 기술 성장의 한계, 자율주행 사고 시의 책임과 배상 문제, 자율주행 확대에 따른 운송서비스 관련 업종의 일자리 문제와 사회적 수용성 문제 등으로 산업 발전과 적용에 따른 제도적 논의가 필요한 산업이기도 함.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미국, EU, 일본, 중국에 이어 글로벌 5위 수준으로³⁾, 첨단 기술 시장에서 기술적 선점이 중요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과 제도개선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3)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술 수준 조사 및 기술경쟁력 분석보고서」, 2022.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총 4장, 16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1> 제정안 구성

장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의 설립 등)
제3장 산업 기반조성 및 지원	제9조(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의 지정 및 지원)
	제10조(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11조(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2조(자율주행 모빌리티 구매 등 지원)
	제13조(시범운영 데이터의 제출 및 관리)
	제14조(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의 유통 및 활용)
제4장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제15조(전문인력 양성)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부칙	시행일

첫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함.

둘째,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를 두고,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을 설립함.

셋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에 대해 연구개발, 공급안정화 지원과 세제지원 등을 하게 하고,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기업을 지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우선선정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함.

넷째,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가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이 이를 거래·유통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함.

다섯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함.

다. 타법과의 관계

제정안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의 산업과급효과와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제정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다만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하여 최근 제정·시행되고 있는 타 법률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 이동수단 관련 산업의 혁신과 기반조성을 위한 법률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이고,

이동수단 별로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선박과 관련해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이고, 드론과 관련해서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

또한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 전반의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상황임.

<표 2>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법

구분	법률명	소관	시행
모빌리티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3.10
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상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24.7.
선박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25.1.
드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4.4.
인공지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1. (예정)

현재 시행중인 또는 시행예정인 각 법률에서 모빌리티 일반·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운항선박, 드론 및 인공지능 관련 산업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각각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연구개발 등에 관한 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등 제정안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제도와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제도와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빌리티 기술 지원·육성을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법취지에 동의하나, 현행법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타 부처 소관 사항이 함께 규정되고 있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제도와 중복되는 내용을 다수 규정하고 있어 업무 중복에 따른 정부 및 산업계 정책 혼선이 우려된다는 의견이고,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과 관련해서는 「자율운항선박법」에 별도의 육성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선박 관련해서는 제정안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관련 정책은 2026년 1월 시행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대통령 소관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소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부처간 업무에 혼선이 우려된다는 의견임.

2. 주요내용 검토

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안 제5조·제6조)

제 정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현황 및 미래 수요 예측 2.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전략 3.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 조성 계획 4.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공급망 안정화 및 국산화 촉진 전략 5.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6.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전략 7. 그 밖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점검하여야 하며, 기술환경의 변화 및 시장 동향과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추진 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 2. 사업별 추진일정 및 소요 예산 3. 사업별 추진주체 및 협력기관 4. 사업별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5조와 제6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는 것임.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이 성격상 다부처 소관이 중복되는 산업이고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인 점을 고려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 인프라와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고⁴⁾,

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연구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율협력주행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5),

2026년 1월 시행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인공지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6)을 고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외 시장 상황 및 분석
3. 미래자동차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9.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윤리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은 자율주행자동차 인프라 및 교통물류체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은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은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전반에 관한 것인 반면에,

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과의 관계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국가계획이 이원화될 경우 산업계에 혼란을 가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러 부처간 소관 조정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별산업에 대해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인공지능 관련 부처간 협업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7.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제협력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 및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의 설치 (안 제7조·제8조)

제 정 안
제7조(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부처 간 정책·사업의 총괄·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시험·인증 기반 확충, 부품·장비·소프트웨어·자율주행 플랫폼 등 핵심품목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수집·분석·거래 및 유통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 전략에 관한 사항 6.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7. 규제개선 및 규제특례 부여 등 혁신 촉진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의 설립 등) ①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성과 확산 지원
2.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및 거래 지원
3.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의 창업 및 성장 지원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
5.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정안 제7조는 제정안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부처간 정책·사업의 총괄과 조정,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위원회를 설치하게 하는 내용임.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의 성격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체계화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성격을 고려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심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두어 모빌리티에 관한 중요정책과 법령·규제 관련 개선사항 등을 심의하게 하고 있고⁷⁾,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두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을 심의하고 있으며⁸⁾, 대통령 소속으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에 따라 설치될 예정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산업부 문 및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사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⁹⁾ 소관과 심의내용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임.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각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될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됨을 들어 제정안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이고,

7)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9) 인공지능기본법 제7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 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이 금지되고 있으므로¹⁰⁾ 현행법상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제정안 제8조는 기술개발과 성과 확산 지원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사업 전문수행기관으로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을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임.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관련한 기술개발 지원,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창업·성장 지원, 인력양성 등의 업무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 집행에 해당하므로 정부부처가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전담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¹¹⁾,

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¹²⁾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전문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업무를 소관하는 별도 기구를 신설하는 경우 기업 입장에서 중복 업무에 대해 여러 기관을 지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1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 핵심품목 및 산업지구의 지정·지원

(안 제9조·제10조)

제 정 안

제9조(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반도체, 센서, 통신장치,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이하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실증·시험·평가·인증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 및 활용 지원
2. 공급망 안정화, 국산화 촉진 및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3.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의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또는 우선 처리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을 개발 또는 생산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을 개발 또는 생산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의 지정 기준, 지원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실증시험센터, 데이터센터, 교육훈련시설, 공동연구개발시설,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국제협력 거점시설 등의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

2.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 실증·시험·평가·인증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재정 및 금융 지원
 3.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의 행정절차 간소화 또는 우선 처리를 위한 조치
 4.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 간 협력사업 지원
 5.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지원
 7.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의 해외 인증 획득 및 해외 마케팅 등 해외진출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가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세부적인 지원 대상·규모·방식 및 절차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에 입주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에 입주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9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반도체·센서·통신장치 등 품목을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 연구개발·기반시설 구축과 공급망 안정화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고,

제정안 제10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를 지정하여 산업지구 내에서 기반시설을 운영하고 세제지원 및 국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임.

제정안에 따라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핵심품목에 재정적·금융적 및 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자율주행 모빌리티에 특화된 산업지구를 설치하여 세제 지원 등 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저변 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¹³⁾,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¹⁴⁾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¹⁵⁾ 등

13)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연구·개발 등) ① 국가는 첨단모빌리티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1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

1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단지·지구·지역 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에 따른 첨단투자지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지구·지역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단지·지구·지역 등의 지정 신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

현행법에 따라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기획재정부는 국세 특례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고려할 때¹⁶⁾ 개별법에 국세 특례를 규정할 실익이 없으며,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감면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¹⁷⁾ 해당 원칙에 따라 감면을 받도록 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단지·지구·지역 등의 지정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지구·지역 등(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특화단지 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2. 특화단지 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3.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
4. 특화단지 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
6.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시설 및 성능검증 기반 등의 구축
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그 대출자의 일부 보조
9.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서비스 등의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장비·시설 구축 및 운영
 2.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제공기업에 대한 지원
 3.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
 4. 그 밖에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6)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 17)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는 경우 수익계약 방식으로 일반재산 대부 등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고려할 때¹⁸⁾ 개별법에 지방세 특례를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라. 전문기업의 지정 및 모빌리티 구매 등 지원

(안 제11조·제12조)

제 정 안

제11조(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관련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중소·중견기업·대기업 또는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기업에 대하여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우선 선정
2. 공공조달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3. 해외진출 촉진 및 판로 개척, 기술이전 및 사업화 및 금융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세부적인 지원 대상·규모·방식 및 절차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율주행 모빌리티 구매 등 지원)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자율주행 운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11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기업을 지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시 우선 선정, 공공조달 사업 가점 부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금융지원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고,

제정안 제12조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이나 사업자가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임.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선도적 성격을 고려할 때 기술 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구매 또는 임차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첨단모빌리티 개발·이용·보급 시범사업 사업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고¹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필요시설 설치·운영사업 등 산업육성에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19)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모빌리티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있으며²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해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등 사업지원을 할 수 있는 등²¹⁾

현행법에 근거해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기업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 중복에 따른 예산 중복지원 등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생략)

- ④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자율주행 데이터의 관리 및 유통

(안 제13조 · 제14조)

제 정 안

제13조(시범운행 데이터의 제출 및 관리) ①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의 정책 수립,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검증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실증 및 운행 결과에 관한 데이터(이하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라 한다)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시범운행 또는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2. 자율주행자동차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제조·개발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자율주행 플랫폼의 운영 또는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율주행 운행구간, 주행거리, 운행 횟수 등 운행 이력 정보
2. 자율주행 모드와 수동모드 전환 기록, 전환 시점 및 전환 원인
3. 사고 발생 시점, 위치, 사고 유형, 피해 정도 및 원인 추정에 관한 정보
4. 시스템 오류 및 이상 상황의 발생 이력과 그 원인
5. 운전환경 정보(주행시간대, 기상상황, 도로 유형, 통신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6. 그 밖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의 정책 수립,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검증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를 제출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는 해당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가진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원에 대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의 확보 및 활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 제출에 소요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거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또는 그 밖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진흥원은 제출된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를 수집·보관·관리 및 활용

할 때에는 무단 유출·이용 방지,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필요한 보안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 제출의 범위·주기·방법·절차 및 품질기준, 진흥원의 보안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의 유통 및 활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의 수집·분석·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의 정책 수립,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검증 및 기술개발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 거래 및 유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의 거래 및 유통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보안 조치, 분쟁의 조정 등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 거래 및 유통에 필요한 절차·방법, 수수료의 산정, 품질관리 및 보안 조치, 분쟁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13조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가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 및 운행 결과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에 제출하게 하는 것이고,

제정안 제14조는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거래 및 유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임.

자율주행 모빌리티 주행 안정성과 고도화에 있어 자율주행 운행결과 데이터가 결정적인 점을 고려할 때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취합하여 관리하고 이를 유통하게 할 경우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발전과 고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다만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 또는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를 제출받아 해당 데이터를 일반에게 제공할 수 있고²²⁾,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제조사 등에게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등 정보와 자료를 요청하여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등²³⁾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운행정보를 취득하여 관련 정보를 플랫폼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

22)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제15조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때에는 해당 부분의 수집·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데이터 등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여 일반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와 자동차제조사들에게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진단에 따른 정보 및 자료에 대한 확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장, 기능장애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의 이탈 등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법에 따른 정보제공 관련 규정과 중복되는 이중규제로 작용하여 사업자 등에게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바.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안 제15조 · 제16조)

제 정 안

제15조(전문인력 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산·학·연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3.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반의 제어·알고리즘, 보안, 실증·운영 등 분야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4.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및 정착 지원
5. 「병역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제도 등을 활용한 전문인력 확보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시설과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시험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 협약 체결, 해외 인증 획득 및 해외 실증·시험 지원
2.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표준화에 관한 협력
3. 해외 전문인력 교류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4.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 및 현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국제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6. 수출에 필요한 보증·보험 또는 자금 대출 등 금융 지원
7. 그 밖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정안 제15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경비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제정안 제16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관련 해외 시험인증기관과의 상호인증과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임.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성격 상 국제 표준 제정·개정 시 국내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성이 큰 점, 국제공급망 및 수급 네트워크와 R&D 협업이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체계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상호인증과 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빌리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첨단모빌리티 관련 국제협력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으며²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 인프라 및 교통물류체계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제교류·국제표준화·국제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²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래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연구와

24)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육성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모빌리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빌리티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력기관(이하 “전문인력 협력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가는 첨단모빌리티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국내 첨단모빌리티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2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공동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등²⁶⁾ 현행법상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관련 인력양성과 국제협력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법상 제도와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기능 중복과 예산 중복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0

26)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2.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현장연수사업
3.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4.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5. 미래자동차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확충사업
6.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기술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연구
2.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3. 미래자동차 부품과 공급망이 연계된 외국 정부·기관·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및 공동 기술개발
5.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